

2026년 근로자 「출산·육아 지원제도」 안내

임신기

(1) 난임치료휴가 <유급>

- ◆ **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** 사용가능
- ◆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**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**

(2) 태아 검진시간 <유급>

- ◆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허용해야 함(임금 삭감 금지)
* 임신28주까지 4주1회, 임신29주~36주는 2주1회, 임신37주 이후는 1주1회

(3) 유산·사산휴가 <정부지원>

- ◆ 임신초기(15주까지) 10일, 16주~21주 30일, 22주~27주 60일, 28주 이상 90일

(4)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출퇴근시간 변경 <유급>

- ◆ **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근로자**는 1일 최대 **2시간** 단축근로 가능
*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,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
- ◆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**출퇴근시간을 변경**하여 근무할 수 있음

출산기

(5) 출산전후휴가 급여 <유급,정부지원>

- ◆ 출산 전·후로 **90일**(다태아 120일) 휴가 사용 가능
* 대기업 근로자는 30일, 중소기업 근로자는 **90일 정부지원(월 최대 220만원)**
- ◆ **미숙아**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**100일** 사용 가능

(6)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<유급,정부지원>

- ◆ 배우자 출산휴가 **20일** 사용 가능(중소기업 근로자는 **20일 전체 정부 지원**)
* 최대 3회 분할(4개 구간) 사용 가능
*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**120일 이내** 사용

육아기

(7) 육아휴직 급여, 6+6 부모육아휴직제 <정부지원>

- ◆ 자녀 한명당 **1년 사용** → **아래의 경우 1년 6개월** 사용 가능
* **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** 또는 한부모, 중증장애아동부모에 해당하는 경우
- ◆ **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**으로 인상
* (1~3개월) 최대250만원 → (4~6개월) 최대200만원 → (7개월 이후) 최대160만원
- ◆ **(6+6 부모육아휴직) 생후18개월 내 부모 함께 육아휴직시 첫 6개월**(통상임금 100%)
* (1개월)250만원→(2개월)250만원→(3개월)300만원→(4개월)350만원→(5개월)400만원→(6개월)450만원
→(7개월이후부터 특례 종료)160만원

(8)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<정부지원>

- ◆ **12세(초6) 이하**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**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단축 1년** 가능,
육아휴직 미사용시 근로시간단축 최대 3년 가능
- ◆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**월 최대 625,000원** 지원
- ◆ **최소 사용 단위기간 1개월**